

「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」 신청 공고

청년창업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를 위한 「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」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5. 22.

제천시장

1. 신청기간: 2025. 6. 2. ~ 자금소진시까지

2. 지원대상: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소상공인)으로, 보증신청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19세 이상 45세 이하,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

※지원제외대상

- 가. 금융·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
- 나. 휴·폐업을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·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업자
- 다. 재단의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(붙임1참고)

3. 지원내용

【특례보증* 지원】

- 용자규모 : 72억원(업체당 최대 1억원) ※자금소진시 접수 종료
- 자금용도 : 운전자금에 한함
- 용자기간 : 5년 만기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- 용자금리 : (전액보증) CD(91일) + 1.7% 이내, (부분보증) CD(91일) + 2.0% 이내

*CD(91일)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(91일), 전주 목요일 종가기준(휴일인 경우 기준일 직전 영업일 종가 기준)으로 한다.

*은행 내부적으로 운용되는 기준금리가 상기의 기준금리와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에는 은행 내부 운용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.

- 보증비율 : (5천만원 이하) 100%, (5천만원 초과) 90%
- 보증료율 : 연 0.8%

※특례보증이란?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·보증비율·대출금리 등을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하여 보증 지원을 강화한 보증임.

【이차보전금 지원】

- 5년간 이차보전금(4.5% 이내) 지원 : 소기업(소상공인)이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5년간 연리 최대 4.5%의 금액을 은행에 직접 지급 ※ 4.5% 초과분은 신청자 부담
- 협약 은행기관: NH농협은행 제천시지부점, 하나은행 제천지점(2곳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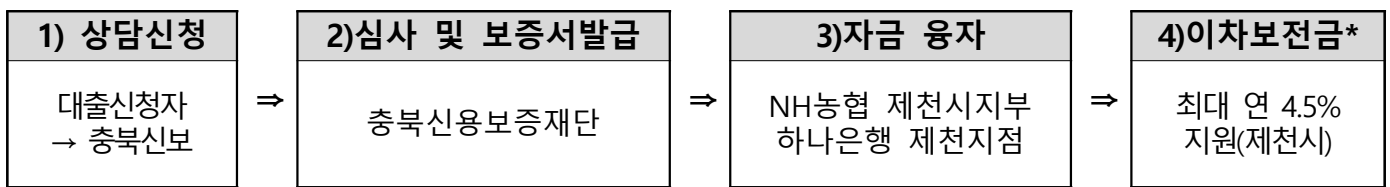
【보증수수료 지원】

- 첫해년도 보증수수료(0.8%) 지원 ※이후 보증수수료는 신청자 부담

4.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

- 신청방법 : **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**
(상담예약 방법은 홈페이지(www.cbsinbo.or.kr) 참조)

- 처리절차



* 연 최대 4.5%까지 시에서 은행에 직접 지급 / 4.5% 초과 이자는 신청자 부담

5. 이차보전금 지원 중지

-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
- 융자금을 목적 또는 용도 외 사용한 경우
-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
→ 단, 연체된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휴·폐업을 신고하였거나, 다른 시·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
→ 단, 폐업 후 제천시에서 재창업을 통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음

6. 기타사항

- 기타 세부사항은 제천시·충북신용보증재단·협약은행 업무협약에 따름

7. 문의처

-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(☎ 043-249-5790)
- NH농협은행 제천시지부점(☎ 043-644-3612)
- 하나은행 제천지점(☎ 043-651-1111)
- 제천시청 미래정책과(☎ 043-641-5273) 끝.

표준산업분류	업종
56211	일반유흥 주점업
56212	무도유흥 주점업
68	부동산업(다만, '부동산 관련 서비스업'(682) 및 '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'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)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46102 중	담배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(다만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(66199)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다단계판매. 다만, 「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
	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향락 등 불건전 업종 등

※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